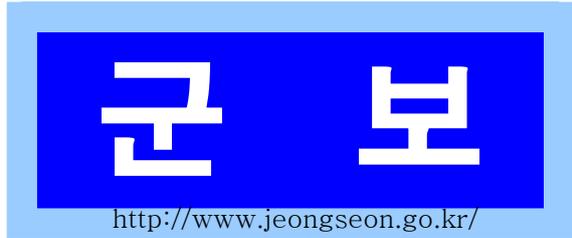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호 2008. 5. 21 (수)

【조 례】

- 조례제2105호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례제2106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조례제2107호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조례제2108호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례제2109호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11
- 조례제2110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13
- 조례제2111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조례제2112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
- 조례제211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22
- 조례제2114호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조례제2115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조례제2116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46
- 조례제2117호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50
- 조례제2118호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53
- 조례제2119호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54
- 조례제2120호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69

【고 시】

- 고시제2008-32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77
- 고시제2008-35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79

【공 고】

- 공고제2008-273호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80
- 공고제2008-283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83
- 공고제2008-285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 엽서 공시송달.....84
- 공고제2008-28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및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86
- 공고제2008-287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88
- 공고제2008-288호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9
- 공고제2008-293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2
- 공고제2008-294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9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05호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의회”을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로,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 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 및 제6조제3항중 “지방의회”를 각각 “군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u>지방의회</u>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u>군수</u>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p> <p>② <u>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u></p>	<p>제3조(조례)① -----<u>정선군의 회(이하 “<u>군의회</u>”라 한다)</u>-----<u>정선(이하 “<u>군수</u>”라 한다)</u>----- ----- ② 「<u>지방자치법</u>」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u>군의회 의장</u>이 공포하는 <u>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u></p>
<p>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u>지방의회</u>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u>군수</u>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p>	<p>제5조(예산등)----- ----- --<u>군의회</u>----- ----- -----.</p>
<p>제6조(번호)①~② (생략)</p> <p>③<u>지방의회</u>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u>지방의회</u>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u>군수</u>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번호)①~② (현행과 같음)</p> <p>③<u>군의회</u>----- <u>군의회</u>----- ----- ----- --.</p>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됨에 따라 부합되는 관련 조항 및 조문의 불분한 사항을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변경 (제3조)
-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자구 수정 (제3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제3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06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주사로”를 “관련업무담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생략)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장학기금관리) ① (생략)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사회복지담당 주사로</u> 한다.	제10조(장학기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관련업무담당</u> <u>으로</u> -----.

가. 개정이유

- 정선군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중 조례와 규칙에 중복 명시되고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조문인 “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를 삭제 (제2조제2항제3호)
-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변경 (제10조제2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07호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8조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9조중 “사회복지담당주사가”를 “관련업무담당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의료급여법</u>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의료급여법」</u> ----- ----- ----- ----- .
제8조(수당 및 여비) 정선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u>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u>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 ---- <u>「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 조례」</u> ----- .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u>사회 복지담당주사</u> 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 <u>관</u> <u>련업무담당</u> 이 ----- ----- .

가. 제안이유

- 정선군 조직 개편 및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선군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위원회 간사 임명사항 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변경(제9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08호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3조중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주사로”를 “관련업무담당으로”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료급여법</u> 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의료급여법」</u> ----- ----- -----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u>의료급여법시행령</u>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u>사회복지담당주사</u> 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u>「의료급여법 시행령」</u> ----- ----- ----- <u>관련업무담당으로</u> -----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u>지방재정법</u>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u>「지방재정법」</u> ----- ----- ----- ----- -----.
제7조의 2(결손처분) (생략) 2. <u>의료급여법</u>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생략)	제7조의 2(결손처분) (현행과 같음) 2. <u>「의료급여법」</u> ----- ----- 3. (현행과 같음)

가. 개정이유

- 정선군 조직 개편 및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선군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회계공무원의 임명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변경(제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09호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포상조례”를 “정선군 포상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p>	<p>제4조(포상의 종류)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p>
<p>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p>	<p><삭 제></p>
<p>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 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향토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p>	<p><삭 제></p>

가.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모범공무원수당의 지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상훈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공무원포상과 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제4조,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0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부문에 공적이 현저히 뛰어날 경우 부분별 시상은 2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상패와 부상(현금 또는 상품)으로 한다”를 “상패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서무담당”으로, “서무담당주사가”를 “그 소속직원이”로 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상부문) ① (생략) ②향토민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조(시상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부문에 공적이 현저히 뛰어날 경우 부분별 시상은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시상등) ① (생략) ②시상은 <u>상패와 부상(현금 또는 상품)으로 한다.</u>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4조(시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상패로</u> -----. ③ <삭 제>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서무담당주사가 된다. <신 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서무담당</u> ----- 그 소속 직원이 ----. 제10조의 2(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향토민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적이 뛰어날 경우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향토민상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해당부문 후보자들의 공적이 현저히 뛰어날 경우 2인 이상의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제2조 제2항)
- 시상은 부상을 제외한 상패로 하도록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
-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제10조 및 제10조의 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1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를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제1호중 “무주택광산근로자” 를 “무주택 군민” 으로 하고, 같은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하되, 광산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공급 후 공가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광산근로자를”을 “군민을”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신청 대기 순에 의한다.

제9조제2항중 “별표”를 “별표2”로 하고, 같은조 제6항중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4조중 “지방재정법, 공동주택관리령,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로 한다.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정선군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3번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	

〈별표 2〉

입 주 부 담 금

(단위 : 원)

아파트명	평 형 전용/m ²	입 주 보증금	층별	월임대료	월관리비
사 북 고 한	13평형	1,150,000	1층	37,000	13,000
			2	41,000	
			3	41,000	
			4	38,000	
			5	35,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부대시설 및 복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위치)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광 산 근로자 임 대 아파트</td> <td>정선읍 북실리 616-14,617-1번지 남면 무릉리 590-1번지 고한읍 고한리 63, 신257-1번지 시북읍시북리3009, 30B, 3047번지</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고	광 산 근로자 임 대 아파트	정선읍 북실리 616-14,617-1번지 남면 무릉리 590-1번지 고한읍 고한리 63, 신257-1번지 시북읍시북리3009, 30B, 3047번지			
명 칭	위 치	비고							
광 산 근로자 임 대 아파트	정선읍 북실리 616-14,617-1번지 남면 무릉리 590-1번지 고한읍 고한리 63, 신257-1번지 시북읍시북리3009, 30B, 3047번지								
제3조 (정의) (생략)	<p>1. "아파트"라 함은 군이 국고 보조금으로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광산 근로자에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p> <p>2.~4. (생략)</p> <p>5. "광산업체"라 함은 군에 소재하고 가행 중인 모든 광산을 말한다.</p> <p>6. "광산근로자"라 함은 모든 광산 업체에 재직하는 광산 근로자를 말한다.</p>	제3조 (정의) (현행과 같음)	<p>1. ----- ----- 무주택 군민 ----- ----- -- .</p> <p>2.~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제5조 (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광산업체에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중 무주택자로 한다. 다만, 임대 공급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하되, 광산근로자 재직경력 세대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대 공급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입주자 선정) ① <u>입주자 선정은 광산 업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선정 하되 광산 업체별로 근로자수, 생산능력, 사택 유무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u>광산근로자</u>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공모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임대 공급 후 공가 발생시는 광산 근로자의 입주 신청자가 없을시 무주택 일반 주민을 선정 입주시킬 수 있다.</u></p> <p>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입주 결정을 통지 하여야 한다</p>	<p>제6조 (입주자 선정) ① <u>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신청 대기순에 의한다.</u></p> <p>② ----- 군민을 ----- -----</p> <p>< 삭제 ></p> <p>④ --- 제2항 ----- ----- --</p>
<p>제9조 (임대료 및 관리비) ① (생략)</p> <p>② 아파트 입주 보증금 및 임대료는 <u>별표</u>와 같다.</p> <p>③ ~ ⑤ (생략)</p> <p>⑥ 임대료를 규칙이 정하는 지정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u>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생략)</p>	<p>제9조 (임대료 및 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2</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u>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임대기간) ① (생략)</p> <p>② <u>제6조 제3항에 의한 일반 주민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시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임대계약 기간 중 광산근로자의 입주 신청자가 있을시는 무주택 일반 주민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순위에 의해 입주토록 한다.</u></p> <p>③ (생략)</p>	<p>제11조 (임대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재산관리)①아파트 단지내 상가등 건물의 관리는 <u>군 공유재산관리조례</u>에 의한다.</p>	<p>제13조 (재산관리) ----- ----- <u>「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u> ----- -----</p>

현행	개정안
<p>② 군수는 아파트의 매입 또는 건립목적 및 기능의 감소 또는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u>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u>지방재정법</u>, <u>공동주택관리령</u>, <u>군 공유재산관리조례</u>를 준용 한다.</p>	<p>② ----- ----- ----- <u>「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 -----</p> <p>제14조 (준용)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u>「주택법 시행령」</u>, <u>「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u> -----</p>

가. 제안이유

- 고한, 사북 지역의 광산 업체가 폐광되고, 무릉 및 북실 임대아파트가 매각 되었 으며,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개정 및 삭제 (제1조~제3조, 제6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를 정선군 임대아파트로 하며,
 - 광산근로자를 군민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중 “광산업체” 및 “광산근로자” 를 삭제
- 매각 아파트 위치삭제 및 현 아파트 위치개정 (제2조 / 별표1)
 - 기 매각된 무릉 및 북실 임대아파트 위치를 삭제 하며,
 - 토지합병으로 변경된 고한 및 사북 임대아파트 위치를 개정
- 입주자격 범위 및 선정방법 개정 (제5조, 제6조)
 - 입주자격 범위를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중 광산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를 우선하여 입주하며,
 - 입주자 선정방법을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 신청 대기순에 의함
- 개정된 관련법령 개정 (제9조, 제14조)
 -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공동주택관리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2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를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2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군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관리 운영 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광산근로자 임대 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임대 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주택공사 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여 무주택 광산근로자에게 임대하여 관리 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 하여 무주택 군민에게 임대하여 관리 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p>

가. 개정이유

- 고한, 사북 지역의 광산 업체가 폐광되고,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를 관리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삭제 및 개정 (제1조, 제2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를 정선군 임대아파트로 하며,
 - 무주택 광산근로자를 무주택 군민으로 개정
- 개정된 관련법령 개정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특별회계 설치)를 제126조로 개정
- 용어의 정의 개정 (제2조)
 - “아파트” 용어의 정의를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설치조례상 용어와 동일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군수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군수는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⑦군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페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 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한다.

②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교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정선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정선군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에 있는 업체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군수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 부여기준은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정선군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선군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정선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3. 토의 및 진행사항
-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현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p>「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p>「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p> <p>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정 선 군 수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호 판	규격			
	모양			
	재질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 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면적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p> <p>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능 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p>「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귀하</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제3조, 안제4조)
 - 해당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자의 5분의 1이상 변경요구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
-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이장을 통한 2회 이상의 방문고지 후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
-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제6조 ~ 안제8조)
-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제9조, 안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제11조 ~ 안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제15조 ~ 안제18조)
-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안제19조 ~ 안제21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제22조, 제23조)
-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24조 ~ 안제3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4호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 ----- ----- ----- ----- -----.</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u>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 ----- <u>법 제10조제1항</u>----- ----- ----- -----.</p>
<p>제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군수는 <u>법 제1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u>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결과 그 의견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④(생략)</p>	<p>제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u>법 제 10조제1항</u>----- ----- ----- ----- ----- ----- ----- ----- ----- -----.</p> <p>②~④(현행과 같음)</p>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2조, 제3조제1항 조문 개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5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4항중 “법 제26조”를 각각 “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법 제41조”를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법 제63조제3항제8호”를 “법 제68조제3항제7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p> <p>③~④(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17조 ----- ----- ----- ----- ②----- 법 제14조----- ----- ③~④(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4.(생략)</p>	<p>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 ----- ----- 법 제8조제3항----- ----- 1.~4.(현행과 같음)</p>
<p>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3.(생략)</p>	<p>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 법 제25조 ----- ----- 1.~3.(현행과 같음)</p>
<p>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1.~5.(생략)</p>	<p>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25조----- ----- ----- ----- 1.~5.(현행과 같음)</p>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이 전부 및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1항 조문 개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6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호중 “법 제48조 및 영 제69조”를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47조제2항2호”를 “법 제4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를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법 제34조 및 제35조”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의 규정 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농지법</u>」 및 「<u>농지법 시행령</u>」----- ----- ----- -----.</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법 제48조 및 영 제69조</u>의 위원회의기능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농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46조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u> ----- -----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추천 및 선임) ① 각리장은 군수로부터 <u>법 제47조제2항2호</u>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 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u>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u>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추천 및 선임) ① ----- ----- <u>법 제45조제2항제2호</u> ----- ----- ----- 「<u>농지법</u>」 <u>시행규칙 제54조</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장은 <u>법 제36조 및 제37조</u>의 규정에 의한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② (생략)</p>	<p>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u>법 제34조 및 제35조</u> ----- ----- ----- ----- ----- ----- ②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읍면 농지관리위원 추천서

< 추천자 인적사항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람을 「농지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읍면 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농지관리위원 추천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년 월 일

정선군 읍면 리장 (인)

정선군수 귀하

농지관리위원 추천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주 소 지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⑤ 최종학력	학교(졸업,중퇴)			
	⑥ 주요경력				
영 농 현 황	⑦ 소유농지		(단위 : m ²)		
	전	답	과수원	계	
	⑧ 임차농지		(단위 : m ²)		
	전	답	과수원	계	
	⑨ 영농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⑩주재배작물				

가. 개정이유

- 농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상위 법과 일치시켜 행정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및 제1조 및 제4조, 제6조, 제10조 조문 개정
- 별지 제1호 서식 조문변경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7호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을 「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로 한다.

제1조 본문중 “농어촌정비법”을 “ 「농어촌정비법」 으로, “농지개량사업”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2.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5.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
6.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4조중 “법 제53조”를 “법 제55조”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중 “농지개량사업”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u>농지개량사업</u>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농업생산기</u> <u>반정비사업</u>----- ----- -----.</p>
<p>제2조(사업의 범위) <u>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개, 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폐합</u> 2. <u>구획정리사업 (경지정리)</u> 3. <u>개답 또는 개정</u> 4. <u>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u> 5. <u>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u> 6. <u>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물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u> 7. <u>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제2조(사업의 범위) <u>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어촌용수 개발 사업</u> 2. <u>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u> 3. <u>농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u> 4. <u>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u> 5. <u>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u> 6. <u>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u>
<p>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② (생략) ③ <u>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u></p>	<p>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55조----- 수혜자 -----</u> ----- -----.</p>

현 행	개 정
<p>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u>농지개량사업</u>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u>농지개량사업</u>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u>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u> ----- ----- ----- -----.</p> <p>④ (현황과 같음)</p>
<p>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법 제11조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u>농지개량사업</u>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 -----<u>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u>----- ----- ----- ----- ----- -----.</p>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 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차구수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8호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폐지이유

- 상위 법령인 「수의사법」에 공수의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여비규정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19호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정선군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 또는 시장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선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강원도·정선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 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 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정선군 징수관(인)		정선군 징수관(인)			정선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과)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과)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과)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과)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납 입 기 한			납 입 기 한			납 입 기 한		
납 입 장 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시의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겠습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정선군 징수관(인)			정선군징수관(인)			정선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p>				
<p>정선군수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주 소	(한 자)	주민등록번호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65조, 제67조,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제10조)
 - 등록시장 3,000㎡이상, 인정시장 1,000㎡이상 개설, 주요시설물관리 상인조직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제14조)
 - 시장과 상점가가 연결하여 하나의 상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 임시시장의 등록 및 취소 요건을 정함(제15조~제18조)
 - 토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함.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제22조)
 - 직영 매장 설치자격을 지방자치단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있는자로 하고, 매장 사용시 50% 감면 가능
-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제30조)
 - 등록 및 취소는 군수에게 하고, 군수가 요구하는 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제39조)
 - 시설물 소유권 군수에게 있고 상인조직에게 위탁 운영 가능,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서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0조~제45조)
 - 임시시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각종 보조사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자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년 5월 19일

정선군조례 제2120호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및 토지의 점 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8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07.06이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text{m}^3/\text{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text{m}^3 \sim 0.5\text{m}^3/\text{초}$ 까지 연액 10,000원 $0.5\text{m}^3/\text{초}$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 제4호의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text{m}^3$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 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text{m}^3$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은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 포함)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5

구 분	산 정 기 준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소하천에 한함)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3.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소하천등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 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하수 도관, 송유관,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초과 직경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직경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			1,500
		직경 1.0m초과			3,000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직경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직경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			2,250
		직경 1.0m초과			4,500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3조 제3항 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점용료의 1/1,000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 국농촌공사가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	없음

[별표 4]

점 용 료 의 감 면 기 준

감 면 기 준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7.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9.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

[별표 5]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2조의2 관련)

번 호	전년대비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	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0/100+(증가율-10/100)× 300/1,000}]
2	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증가율-20/100)× 100/1,000}]
3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증가율-50/100)× 60/1,000}]
4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증가율-100/100)× 30/1,000}]
5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증가율-200/100)× 10/1,000}]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증가율-500/100)× 5/1,000}]

가. 개정이유

- 정선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국·공유재산대부료 등과 함께 과세표준액을 토지가격(공시지가기준)으로 정비하여 다른 사용료등과의 균형유지 도모 및 현실에 맞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시 농지소득금액으로 정하던 것을 토지가 격 기준으로 적용(제2조)
-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여 전년도 보다 당해 점용료 등이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조정산식에 의거 조정(제3조)
-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 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에 징수 (제5조)

정선군고시 제2008-32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군수(농업정책과장)		
	대표자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하 천 명		“별 침”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별 침”		
	면 적	“별 침”	폐천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5월 06일 ~ 영구 (공사기간 2008.05.06 ~ 2008.08.05)		
	목 적 및 사 유	“별 침”		
※ 설계도서 “별도보관”				

하천점용 허가(협의) 내역

허가 받은자		허 가 내 역				비 고
주 소	성 명	점용위치	목 적	면 적 (㎡)	허가기간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수 (농업정책 과장)	정선읍 신월리 1096천	신월리(본동보) 어도 정비사업	17.9 (임시점용 841.8)	2008.5.6 ~ 영구 (2008.5.6 ~ 2008.8.5)	어천
		정선읍 신월리 1096천	신월리(와평보) 어도 정비사업	38.6 (임시전용 583.3)	2008.5.6 ~ 영구 (2008.5.6 ~ 2008.8.5)	어천
		임계면 낙천2리 126-2천, 375천	낙천2리(미락보) 어도 정비사업	85.3 (임시전용 819.8)	2008.5.6 ~ 영구 (2008.5.6 ~ 2008.8.5)	골지천
		임계면 용산1리 138-1천 138-36천	용산1리(돈들보) 어도 정비사업	139.2 (임시전용 510.5)	2008.5.6 ~ 영구 (2008.5.6 ~ 2008.8.5)	골지천

정선군고시 제2008-35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박 순 녀	주 소	영월군 중동면 연상1리 5반
하 천 명		한강(지방1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34번지선		
	허가량	A=456㎡(대지) A=1,034㎡(전)	폐천부 지 예상면 적	□□없음□□
	기 간	2008년 04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대지 및 농경지(전)		

정선군공고 제2008-273호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제2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9일

정 선 군 수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정선어린이집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7-10	810.39㎡ (지상2층)	131명

2. 위탁운영기간 : 3년(2008. 7. 1 ~ 2011. 6.30)

3. 공고기간 : 2008. 5.13 ~ 5. 27(15일간)

4. 접 수

- 기 간 : 2008. 5. 20 ~ 5. 27(6일간 09:00~18:00, 토·일 제외)
- 장 소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법인·단체의 경우
 - ▷ 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보육시설 운영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개인의 경우
 - ▷ 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6.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의 보육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하는 법인, 단체는 제외
- 신청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자
(단, 신청일 현재 정선군 공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예외)

7.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타인 양도 및 전대 금지
- 취약보육과정 운영(영아,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등)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강원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정선군 보육조례 및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8. 제출서류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 별지 제1호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별지 제2호
 - 재정상태 및 협약서 : 별지 제3호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
 - 서약서 : 별지 제5호
 - 별도 제출서류
 - 보육시설의 장,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 원본지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수탁자의 상훈관련 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법인, 단체의 경우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이사회, 임원회 의결서)
 -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자산현황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은행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부채(부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상 세대주(본인포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 * 재산인정범위(개인 : 부부합산, 법인 및 단체 : 공공자산)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15부(제본) 제출(1부는 원본)**

9. 위탁운영자 심사항목(100점 만점)

- | | |
|-----------------------|-----------------|
| ① 보육시설 운영계획(37점) | ② 시설 운영능력(10점) |
| ③ 보육의 전문성(25점) | ④ 지역사회 기여도(13점) |
| ⑤ 면접(시설운영의 비전제시)(15점) | |

10.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사업설명을 통하여 위탁운영자 선정후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결정
- 선정발표 : 위탁운영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11. 유의사항

-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군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 및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며,
-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560-2022, 2972)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2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1

정 선 군 수

-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08.05. 14 ~ 2008. 05. 28 (15일간)
- 3. 공시송달대상자

(2008.05.14현재, 단위:원)

구분	성명(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	송달불능사유
공매 예고	김재진	서울 성북구 장위동233-207 (9통4반)	재산세(토지)	1,009,980	수취인불명
"	지영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3 (9통4반)	취득세(부동 산외 6건	2,964,910	"

4.공시송달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을 위해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정선군청 재무과 징수(033-560-2292)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08-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77조의2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무단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 제 목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 엽서 공시송달
- 송달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경과) 안내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 “붙임참조”
- 공시송달 기간 : 2008. 5. 15 ~ 2008. 5. 30(15일간)
- 상기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54)

2008년 5월 15일

정 선 군 수

<반송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정기검사일	반송사유
1	강원70노1767	김경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 708호	2008.02.26	이사감
2	93어2090	유돈명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58 7/1	2008.04.18	이사감
3	강원80노5605	이 훈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50-9 6/2	2008.04.16	이사감
4	77보8148	이계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6 함백주공@ 2-402	2008.01.11	반송함투여
5	51가4387	김영민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환민@ 209호	2008.04.11	반송함투여
6	강원27노1625	나정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환민@ 911호	2008.04.16	반송함투여
7	77보8148	이계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6 함백주공@ 2-402	2008.01.11	반송함투여
8	93어1692	신영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05 주공사북@ 205-304	2008.02.20	반송함투여
9	강원27노6519	하순섭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 101-1201	2008.04.06	반송함투여
10	02다9113	윤근세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5	2008.05.09	수취인 미거주
11	56로3229	정해길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7-2	2008.04.12	이사감
12	강원80노2763	정석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2008.04.16	이사감
13	강원1누2758	심석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3-2	2008.04.26	이사감
14	90노3891	박명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2-72	2008.03.05	이사감
15	강원80노1805	김춘영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71-5	2008.05.07	이사감
16	93구5277	장재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09-5	2008.05.02	이사감
17	강원27너8789	정광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14	2008.04.11	수취인 미거주
18	02다9479	한원석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4	2008.04.29	수취인 미거주
19	08도9157	김활보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79	2008.04.29	수취인 미거주
20	강원91자1251	박성갑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2008.03.19	반송함투여
21	강원27너7527	이세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2008.02.26	반송함투여
22	강원80노5826	이재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2008.01.17	반송함투여
23	93버6877	김선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2008.03.31	반송함투여
24	강원80너5866	이유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2008.02.10	반송함투여
25	07수5872	최석훈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2008.02.28	반송함투여
26	강원8라2167	윤성욱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2008.03.03	반송함투여

정선군공고 제2008-2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장기미수령, 수취임 미거주, 주소불능, 반송함 투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및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정기검사미필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4호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 “붙임”참조
5.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5. 15 ~ 2008. 5. 30(15일간)
6. 공고내용(의견제출 및 과태료 납부)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의거 자동차등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전화 033-560-2454, FAX 033-560-2039)

2008년 5월 15일

정 선 군 수

<반송내역>

연번	소유자	주 소	차량번호	정기검사 (위반)일자	반송사유
1	오홍권	정선군 북면 남곡리 55	강원7누1675	2007.10.20	이사감
2	권방자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2	37저6892	2007.11.01	이사감
3	박흥문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0-5	52거4131	2007.10.04	이사감
4	최은숙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2	강원2녀5628	2007.11.06	반송함투여
5	김채옥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19	강원80노3853	2007.11.21	이사감
6	이종걸	정선군 남면 무릉리 638-19	39더5218	2007.07.31	이사감
7	박종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	93도6219	2007.08.14	수취인 미거주
8	오병석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강원80노4465	2002.09.10	수취인 미거주
9	김영태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1-67	강원27라7942	2007.11.24	수취인 미거주
10	박해오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강원27노4334	2005.10.07	반송함투여
11	김 웅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70모2529	2007.12.24	반송함투여
12	이계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6	50우6462	2007.12.14	반송함투여
13	김해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93어1494	2007.12.21	반송함투여
14	김기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41	77다8264	2008.01.28	수취인 미거주
15	최종명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1	강원80노5319	2008.01.19	수취인 미거주
16	동원탄좌노동조합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0	강원28노4410	2007.07.21	수취인 미거주
17	전현옥	정선군 동면 화암리 1117	51모2258	2005.08.19	이사감

정선군공고 제2008-287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정 선 군 수

도로 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 선 명	중로 1-1호선
점 용 목 적	한전 배전선로 매설	점 용 기 간	2008. 05. 21 - 2018. 05. 20.
점 용 장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역전중앙로 일원	점 용 면 적	Φ175,150, L= 845m Φ100 L= 1,193m
점용물의종류	전기관로	공 사 기 간	2008. 05. 21 - 2008. 08. 20.
도로복구방법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관로매설
점용자 주소 및 성명	강릉시 포남2동 1255번지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공 고 기 간	2008. 05. 16 - 2008. 05. 30.

정선군공고 제2008-288호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 제명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을 “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으로 개정
-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 [별표1] 에 “굴삭기”를 추가하여 개정
- 대행업자가 예치한 보증금 발생이자에 대한 미지급을 지급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을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으로 한다
- 제4조 2 [별표1] 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제8조 제5항 중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이자는 지급 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급수공사대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560-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2 (우편번호 233-807)
 - 팩스 : 033-560-2109

- 붙임 1. 정선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정선군조례 제 2008- 호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2 [별표1] 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제5항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한다.

【 별지 】

[별표1]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공기구	파이프렌치	8",12",14",18",24"	개	각2
	몽키스페너	10",12",15"	대	각2
	양수기	엔진용(2마력)	“	1
		전기(1마력)	“	1
	굴착기	엔진용	“	1
	파이프머신	전기용	“	1
		수동(2")	“	1
	천공기	수동(2")	“	1
	굴삭기	0.1m ³ 이상 보유자	“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1] 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2. -----				
[별표1]					[--]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기준					-----				
공기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	----	--	--	
	파이프렌치	8",12",14",18",24"	개	각2	----	----	--	--	
	몽키스페너	10",12",15"	대	각2	----	----	--	--	
	양수기	엔진용(2마력)	대	1	----	----	--	--	
		전기(1마력)	대	1	----	----	--	--	
	굴착기	엔진용	대	1	----	----	--	--	
	파이프머신	전기용	대	1	----	----	--	--	
		수동(2")	대	1	----	----	--	--	
천공기	수동(2")	대	1	----	----	--	--		
					굴삭기	0.1m ³ 이상 보유자	대	1	
제8조(보증금대집행) ①~④(생략)					제8조(보증금대집행) ①~④(현행과 같음)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⑤ -----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293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4.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징수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 나.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되도록 개정
 - 제1조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개정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전화 560-2310, 팩스 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 1.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u>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u>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u>----- ----- -----.</p>

정선군공고 제2008-294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 4.27. 제정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행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안 제1조,제2조)
 - 제1조중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를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로
 - 제2조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전화 560-2310, 팩스 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 1.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p>
<p>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중 기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다. ② (생략)</p>	<p>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 ①-----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p>